



December 29, 2022

2023 년 캘리포니아주 실행 노동법, 고용법

1. AB 1041 – 병가휴가시 가족범위 확대

기존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 CFRA) 에서 5 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는 최소 1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가족 병가의 이유로 인해 최대 12 주까지의 무급 휴가 요청시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의 새 법안, AB 1041, 은 기존 법안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법안 입니다. 기존 병가가 가능했던 가족 범위인 배우자, 자녀, (시)부모,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 동반자 (Registered Domestic Partner) 에서 “지정자” (Designed Person) 가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지정자에는 삼촌, 고모, 이모, 사촌등의 친척과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가족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무급휴가 허가시 지정자의 정보를 요청 가능하며 12 개월에 한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B 1041 은 기존 유급병가법 (The 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이 정한 “가족”도 같은 범위로 확대 하여 지정자 포함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병가를 사용케 합니다.

2. AB 1949 –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

2023 년 1 월 1 일부로 직원 5 인 이상의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무급으로 최대 5 일의 상조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에 5 일 이하의 무급또는 유급 상조휴가를 제공했었던 사업체는 2023 년부터 5 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조 휴가 요청이 가능한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시)부모,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와 동반자 입니다. 상조휴가 신청이 가능한 직원은 최소 30 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며 사망시점 3 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사망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상조 휴가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개인 비밀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3. SB 1162 – 공정임금 투명 법 (Pay Transparency Act)

기존법안은 외부 채용인 면접시 면접인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 직책의 연봉 범위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CHOI HONG LEE & KANG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onsultants

343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1700

1 Centerpointe Dr., Suite 350, La Palma, CA 90623 T: (714) 676-8100

3820 Del Amo Blvd., Suite 220, Torrance, CA 90503 T: (310) 542-6373

WWW.CHLKCPA.COM

SB 1162 의 실행으로 2023 년 1 월 1 일부터 아래 3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15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회사 내부/외부의 채용 공고에 채용할 직책의 연봉 범위 (보너스나 Equity-Based 보수는 미포함) 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현 직원이 요청시 현 직원의 직책의 연봉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직책과 연봉 범위의 기록을 채용기간과 퇴사후 3 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용가능한 유급/무급 휴가 목록

Type of leave of absence	Maximum length of absence	Paid or Unpaid
Sick Leave	Number of hours accrued	Paid
Kin Care Leave	Half of sick leave hours	Paid
Family Sick Leave under CFRA (New definition under AB 1041)	12 Weeks	Unpaid
Family Sick Leave Under FMLA	12 Weeks	Unpaid
New Parent Leave	12 Weeks	Unpaid
Pregnancy Disability Leave	4 Months	Unpaid
Paternity Leave	12 Weeks	Unpaid
Bereavement Leave (AB 1949)	5 Days	Unpaid
Voting Leave	Sufficient time to vote	Paid (up to 2 hrs)
Crime Victims Leave	As long as necessary	Unpaid
Domestic Violence Victim Leave	As long as necessary	Unpaid



CHOI HONG LEE & KANG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onsultants

343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1700

1 Centerpointe Dr., Suite 350, La Palma, CA 90623 T: (714) 676-8100

3820 Del Amo Blvd., Suite 220, Torrance, CA 90503 T: (310) 542-6373

WWW.CHLKCPA.COM

Jury Duty or Subpoena Leave	As long as necessary	Unpaid
Military Injury Leave	26 Weeks	Unpaid
Military Spouse Leave	10 days	Unpaid
Leave for School Activities	40 hours per year	Unpaid
Literacy Education Leave	Reasonable accommodations	Unpaid
Drug or Alcohol Rehab Leave	Reasonable accommodations	Unpaid
Organ or Bone Marrow Donor Leave	5 days for bone marrow, 30 days for an organ donation	Unpaid